



TM

산림인증

KFCC/00-001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CoC) - 요구사항

한국산림인증위원회
(Korea Forest Certification Council)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전화 : 02-6393-2744

팩스 : 02-6393-2718

홈페이지 : <https://kfcc.kofpi.or.kr>

Copyright notice

© PEFC Council 2020

이 표준의 PEFC Council이 소유한 저작권에 의해 보호됩니다. 이 문서는 PEFC Council 웹사이트 www.pefc.org에서 또는 요청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표준의 어떤 부분도 PEFC Council의 허가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어떠한 형태 또는 수단으로도 변경, 수정 복제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이 문서의 공식 버전은 영어입니다. 이 문서의 번역본은 PEFC Council 또는 PEFC 국가운영기관(NGBs)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언어 해석에 의문이 있을 경우 영문판이 참고됩니다.

문서명: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CoC) - 요구사항
문서번호: PEFC ST 2002:2020 / KFCC-S-03
승인: PEFC General Assembly **승인일:** 2020. 01. 17.
시행일: 2020. 02. 14.
적용: 한국산림인증위원회 **전환기간:** 2030. 04. 20.
메일: kfcc@kofpi.or.kr

목 차

서론	4
1. 적용범위	4
2. 인용표준	6
3. 용어 및 정의	6
4. 경영시스템 요구사항	15
5. 투입의 식별 및 산출의 선언	21
6. 연쇄 관리(CoC) 방법	23
7. 자가검증시스템(DDS) 요구사항	27
부속서 1 (규범) - 논란의 여지가 있는 원료로부터 온 재료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KFCC 자가검증시스템(DDS)	28
부속서 2 (규범) - 복수 사업장 조직(organisation)의 산림 및 수목 기반 산출품의 생 산과 유통(CoC) 표준 실행	36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CoC) - 요구사항

제 정		2015. 12. 22.
개 정		2017. 12. 22.
개 정		2021. 12. 21.
개 정		2025. 05. 21.

서론

이 표준의 목적은 조직(organisation)으로 하여금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이 KFCC (또는 PEFC)가 인증한 지속가능하게 관리되는 산림, 재활용 재료(material) 및 KFCC(또는 PEFC) 관리된 원료(controlled source)로 생산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정확하고 검증 가능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비고: 이 표준에서는 CoC(Chain of Custody)를 표준 내용의 의미에 따라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 또는 “연쇄관리방법”으로 표현하였음

이 표준에 기반한 실질적인 적용 및 인증을 통해, 조직(organisation)은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에 기여하고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입증할 수 있다.¹⁾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원산지를 알리는 목적은 지속가능하게 관리되는 산림으로부터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장려하고, 더 나아가 전 세계 산림경영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시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촉진하는데 있다.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산림 및 수목을 기반으로 한 제품의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CoC)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KFCC(또는 PEFC) 인증비율표시(claim)를 통해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이 지속 가능하게 관리된 산림, 재활용 재료(material) 및

1)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에 대한 추가 정보는 온라인으로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KFCC(또는 PEFC) 관리된 원료임을 고객들에게 알리기 위해 조직(organisation)이 충족해야 하는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CoC) 요구사항은 구매한 원재료(raw material)와 관련된 원료에 대한 정보를 조직(organisation)의 산출 생산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을 규정된 재료 범주에 따라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설명한다.

이 표준은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CoC)에 대한 세 가지 선택적 접근 방식, 즉, 물리적 분리 방법(physical separation method), 퍼센테이지 방법(percentage method) 및 크레딧 방법(credit method)을 규정한다.

이 표준은 또한, 안전보건 및 노동 이슈에 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CoC) 프로세스에 대한 실행 및 운영을 위한 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CoC) 표준은 KFCC(또는 PEFC) 인증비율표시(claim)와 연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이 표준의 부속서 2는 복수 사업장을 가진 조직(organisation)에 대한 표준의 실행을 규정한다.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CoC) 실행의 결과로서, 인증비율표시(claim) 및 관련 라벨 사용은 ISO 14020을 따른다.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CoC) 내의 재활용 재료에 대해, 이 표준의 사용자는 ISO/IEC 14021 요구사항을 따른다.

제품 라벨링은 조직(organisation)의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CoC) 프로세스에 통합될 수 있는 선택적인 의사소통 수단이다.

조직(organisation)이 제품용(on-product) 또는 비제품용(off-product) 라벨링에 대해 KFCC(또는 PEFC) 인증마크를 적용하는 경우, 인증마크 사용에 관한 요구사항은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CoC)의 필수 사항이 된다.

이 표준은 KFCC 또는 PEFC 상호인정을 받은 산림인증제도에 의해 규정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3자 적합성평가(conformity assessment) 목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적합성평가는 제품 인증으로 간주되며, ISO/IEC 17065를 따라야 한다.

이 표준에서 사용된 용어 중 “~해야 한다(shall)”는 의무조항을 나타내며, “가급적

~해야 한다(should)”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채택하여 실행할 것을 기대하는 권고사항을 나타낸다. “~해도 된다(may)”는 허용을 표현하는 반면에 “~할 수 있다(can)”는 이 표준에서 사용자의 능력이나 사용자에게 열려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2. 인용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되거나 표기되지 않은 모든 인용표준은 최신버전(개정안 포함)이 적용된다.

PEFC GD 2001, Chain of Custody of Forest-Based Products - Guidance for Use

PEFC ST 2001, PEFC Trademarks Rules - Requirements

PEFC ST 2003, Requirements for Certification Bodies operating Certification against the PEFC International Chain of Custody Standard

ISO/IEC Guide 2, Standardization and related activities - General vocabulary

ISO 9000, Quality management systems - Fundamentals and vocabulary

ISO 14020, Environmental labels and declarations - General principles

ISO 14021, Environmental labels and declarations - Self-declared environmental claims (Type II environmental labelling)

ISO 19011, Guidelines for auditing management systems

ISO/IEC 17065, Conformity assessment - Requirements for bodies certifying products, processes and services

EN 643, Paper and board - European list of standard grades of recovered paper and board

3. 용어 및 정의

이 표준의 목적을 위하여 ISO/IEC Guide 2 와 ISO 9000에 제시된 용어 및 정의를 적용한다.

3.1 인정 인증서(Accredited certificate)

인정기관의 심볼/로고를 포함하여 인정 범위 내에서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3.2 PEFC 공인기관(PEFC authorised body)

PEFC 위원회를 대신하여 PEFC 제도를 운영하도록 PEFC 위원회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조직(entity)

비고: 공인기관은 해당 국가 내 PEFC를 기반으로 한 국가산림인증제도 운영기관이거나 PEFC 위원회로부터 PEFC 제도를 운영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조직(entity)을 뜻한다.

3.3 인증 함량(Certified content)

제품 또는 제품군 내 포함된 KFCC(또는 PEFC) 인증 재료의 비율

3.4 인증비율표시 기간(Claim period)

제품군의 인증 함량을 결정하는 기간

비고: 인증비율표시 기간(claim period)은 개별 제품, 제품 주문서 단위(job order) 또는 생산 묶음(batch)으로 규정될 수 있다.

3.5 불만 사항(Complaint)

이 표준의 요구사항 준수나 불만 사항 처리 프로세스 자체와 관련하여 답변 또는 해결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기대하면서 조직(organisation)에게 불만 사항을 표현하는 것

3.6 갈등을 야기하는 목재(Conflict timber)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CoC)의 어느 단계에서라도 군사 집단, 반군 부대 또는 정규 군인이나 민간 행정 단체가 무장 충돌에 개입하거나 그 대표자들이 개입하여, 충돌을 지속시키거나 개인적 이득을 얻기 위해 거래된 나무를 의미한다... 갈등을 야기하는 목재가 반드시 불법적인 것은 아니다.” 목재의 부당한 이용 자체가 충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비고: 본 정의는 UNEP에서 사용된 인용구이다.

3.7 논란의 여지가 있는 원료(Controversial sources)

다음에서 오는 산림 및 수목 기반 재료를 의미한다.

- a) 산림경영에 대한 해당 지역, 국가 또는 국제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활동. 이는 산림경영 관행; 자연 및 환경보호; 보호 수종 및 멸종 위기 수종; 원주민, 현지 지역 사회 또는 기타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의 재산권, 거주권 및 토지 사용권; 보건, 노동 및 안전 이슈; 반부패 및 관련 로열티와 세금 지급 관련 활동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 b) 산림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다양한 목재/비목재 임산물과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수준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비율을 뛰어넘는 활동

- c) 풍경, 생태계, 수종 또는 유전적 수준에서의 생물 다양성의 유지, 보존 또는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는 산림경영 활동
- d)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산림지를 식별, 보호, 보존 또는 휴경지(set aside)로 규정하지 않는 활동
- e) 다음과 같이 전용이 정당화되는 상황 이외에 산림 전용을 야기하는 활동
 - i. 토지 이용 및 산림관리에 관한 국가 및 지역 정책 및 법률을 따르는 경우
 - ii.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산림지역, 사회적·문화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기타 보호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iii. 탄소를 상당히 많이 저장한 산림을 파괴하지 않는 경우
 - vi. 산림의 장기적인 보전과 경제적·사회적 혜택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
- f) 노동에서의 기본적 원칙과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선언(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1998)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
- g) 유엔(UN) 원주민 권리 선언(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2007)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
- h) 갈등을 야기하는 목재
- i) 유전자 변형 수목

비고 1: (3.7 b, d 및 e항에 관한 사항): 농경지의 윤벌기가 35년 미만인 인공림에서의 활동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원료”로 간주하지 않는다.

비고 2: (3.7 i항에 관한 사항): 유전자 변형 수목에 관한 사용 제한은 사전예방 원칙에 의거하여 PEFC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유전자 변형 수목이 인간과 동물의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 유전적으로 개량된 수목이 갖는 영향과 동등하거나 보다 긍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충분한 과학적 데이터가 있지 않는 한, 유전자 변형 수목은 사용하지 않는다.

3.8 크레딧 방법(Credit method)

인증 재료로부터 획득한 크레딧을 동일한 제품군 내의 KFCC(또는 PEFC) 관리된 원료로 전환시키는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CoC) 방법

3.9 자가검증시스템(Due Diligence System, DDS)

산림 및 수목 기반 재료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원료로부터 오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조직(organisation)이 실행하는 정보 수집, 리스크 평가, 리스크 완화를 위한 절차 및 조치(measures)의 체계

비고: 자가검증시스템의 실행을 위해서, 조직(organisation)들이 서로 협력하고 외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으나, 이 표준의 자가검증시스템 요구사항 준수에 관한 책임은 개별 조직(organisation)에게 있다.

3.10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산림지역(Ecologically important forest areas)

다음의 산림지역을 포함한다.

- a) 수변구역이나 습지 소생물권 등 보호되고 있고, 희귀하고 민감하거나 대표적인 산림 생태계
- b) 보호되어야 하는 재래종이나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포함한 지역
- c) 멸종 위기이거나 보호받는 현지 내 유전자원이 포함된 지역
- d) 자연적으로 발생한 종이 풍부하게 분포된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규모 경관지역

3.11 동등한 투입재료(Equivalent input material)

산출 생산품의 외관, 기능, 등급, 유형 또는 가치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서로 대체 가능한 산림 및 수목 기반 재료

3.12 산림(Fores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농지, 초지, 주택지, 도로 등에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는 제외한다.

- a)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
- b)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죽이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 c) 입목·죽을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 d)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임도)
- e) a호부터 c호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와 소택지(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3.13 산림 및 수목 기반 재료(Forest and tree based material)

산림에서 오거나 산림 외 수목(Trees outside Forests)과 같이 KFCC(또는 PEFC) 산림경영 인증을 받은 기타 원료에서부터 오는 재료로서 그 지역/원료에서 발생된

재활용 재료뿐만 아니라 목재 및 보통 비목재 임산물이라 일컫는 코르크, 버섯류, 장과류 등을 포함

3.14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Forest and tree based products)

산림 및 수목 기반 재료로 만들어진 에너지와 같이 측정 가능하지만 유형이 아닌 제품들을 포함한 산림 및 수목 기반 재료로 만들어진 제품

3.15 산림 전용(Forest conversion)

산림을 조림, 숲 가꾸기, 벌채,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사용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비고: 과거 수확된 종과 동일한 우성종이나 과거에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기타 종을 식재, 직접 파종 및/또는 사람이 개입하여 천연종자의 성장을 유도하여 이루어진 갱신은 전용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3.16 인공림(Forest plantation)

목재·비목재임산물·서비스를 주 목적으로 하여 외래종 또는 일부 경우 재래종을 식재 및 파종한 산림

비고 1: 목재·비목재임산물·서비스를 위해 형성된 모든 외래종 임분이 포함된다.

비고 2: 소수의 종으로 구성된 재래종 임분, 집약적 조림지 정리(예: 조림예정지 정리 작업), 곧은 식재열 및/또는 동령림으로 이루어진 임분 등이 포함된다.

비고 3: 정의 적용 시 국가의 산림용어와 법적 요구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3.17 유전자 변형에 의한 수목(Genetically modified trees)

유전 물질이 자연적인 교배 그리고/또는 자연적인 재결합에 의해 발생하지 않는 방식을 이용하여 변형된 수목

비고 1: 아래 나열된 기법은 유전자 변형 수목 생성을 위한 유전자 변형 기술로 간주된다(EU 지침 2001/18/EC).

- 1) 유기체 외부에서 어떠한 수단에도 의해 생성된 핵산 분자를 바이러스, 박테리아 플라스미드 또는 기타 벡터 시스템에 삽입하고, 이러한 물질이 자연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으나 지속적 번식은 가능한 숙주 유기체에 이를 접목하여 새로운 유전 물질의 조합을 형성하는 핵산 재조합 기법
- 2) 마이크로 주입, 매크로 주입, 마이크로 캡슐화 등 유기체 외부에서 준비된 유전력 있는 물질을 유기체에 직접 접목시키는 기법
- 3) 자연적으로는 발생하지 않는 방식을 적용해 2개 이상의 세포를 융합하여 살아있는 세포가 새로운 조합의 유전력 있는 유전 물질을 지니게 되는 세포 융합(원형질체 융합 포함) 또는 이중 교배 기법

비고 2: 아래 나열된 기법은 유전자 변형 수목 생성을 위한 유전자 변형 기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EU 지침 2001/18/EC).

- 1) 체외 수정
- 2) 교배, 형질 도입, 변형 등 자연적 프로세스
- 3) 배수체 유도

3.18 재료 범주(Material category)

KFCC(또는 PEFC) 인증 재료, 기타 재료, 중립 재료 및 KFCC(또는 PEFC) 관리된 원료와 같이 일정한 특징을 갖고 있는 재료

3.19 복수 사업장 조직(Multi-site organisation)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CoC) 관련 활동을 계획, 통제 및 관리하는 식별된 중앙 기능(보통, 중앙 관리 사무소(본사)라 칭함)을 담당하는 곳과 이러한 활동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하는 하나 이상의 사업장으로 구성된 조직(organisation)

3.20 중립 재료(Neutral material)

제품군의 인증 함량 계산 시 고려하지 않는, 금속이나 플라스틱과 같은 산림 및 수목 기반 재료 외의 범주

3.21 조직(Organisation)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책임, 권한 및 관계를 가지고 자체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 또는 사람들의 집합

비고: 이 표준의 맥락에서, 조직(organisation)은 KFCC(또는 PEFC) 인정 인증서의 적용을 받아 표준의 요구사항을 구현한다.

3.22 기타 재료(Other material)

조직(organisation)이 자가검증시스템(DDS)을 통해 재료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원료로부터 온 “경미한 리스크²⁾”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은 산림 및 수목 기반 재료에 대한 재료 범주

3.23 외주처리(Outsourcing)

조직(organisation)의 지속적인 감독 또는 통제 없이, 조직(organisation)의 KFCC(또는 PEFC)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CoC) 관련 활동을 다른 법적 조직(entity)이 수행하는 활동

2) 부속서1의 표1 참고

비고: 운송, 상/하차, 재료/제품의 창고 저장은 다른 재료 범주 또는 인증 함량의 재료가 서로 섞일 수 있는 위험이 있지 않는 한, 외주처리로 간주하지 않는다.

3.24 KFCC(또는 PEFC) 인증 재료(KFCC/PEFC certified material)

다음의 재료 범주를 의미한다.

- a) “x% KFCC(또는 PEFC) 인증”과 같은 KFCC(또는 PEFC) 인증비율표시(claim)와 함께 KFCC 인정 인증서 및 PEFC 공인 인증서의 적용을 받는 공급자 또는 PEFC가 상호인정한 산림경영표준에 따라 PEFC 승인을 받은 별도 제도의 인증 비율표시(claim)와 함께 KFCC 인정 인증서 및 PEFC 공인 인증서의 적용을 받는 공급자가 제공한 산림 및 수목 기반 재료

비고: PEFC가 상호인정한 제도의 인증비율표시(claim)는 PEFC 홈페이지 (www.pefc.org)에 공개되어 있다.

- b) 재활용 재료 (“x% KFCC(또는 PEFC) 인증”이라는 인증비율표시(claim)가 없음)

3.25 KFCC(또는 PEFC) 인증 제품(KFCC/PEFC certified product)

조직(organisation)이 “x% KFCC(또는 PEFC) 인증”이라는 인증비율표시(claim)와 함께 판매/양도하는 제품

3.26 KFCC(또는 PEFC)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CoC)

산림/수목 기반 제품 및 해당 재료 범주와 연관된 정보를 다루고, 정확하고 검증 가능한 KFCC(또는 PEFC) 인증비율표시(claim)를 명시하기 위한 조직(organisation)의 프로세스

3.27 KFCC(또는 PEFC) 인증비율표시(KFCC/PEFC claim)

판매 및 배송 문서에 명시된 재료/제품에 대한 선언으로, 인증비율표시(claim)는 “x% KFCC(또는 PEFC) 인증” 및 “KFCC(또는 PEFC) 관리된 원료”라 표현된다.

비고 1: KFCC(또는 PEFC) 인증 재료가 KFCC(또는 PEFC) 관리된 원료와 혼합된 적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 물리적 분리 방법을 사용하는 조직(organisation)은 공급자가 운송한 인증 재료 또는 “100% KFCC(또는 PEFC) 원산지”라는 인증비율표시(claim)로 운송된 인증 재료에 대해 “100% KFCC(또는 PEFC) 인증” 대신에 “100% KFCC(또는 PEFC) 원산지”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공급자는 PEFC가 상호인정한 산림경영 표준에 근거하여 PEFC 공인 인증서를 발행받은 산림 소유자/경영자로서 “100% PEFC 인증” 또는 기타 PEFC가 상호인정한 제도의 인증비율표시(claim)를 할 수 있다. 퍼센테이지 방법 또는 크레딧 방법을 실행하는 조직(organisation)이 “100% KFCC(또는 PEFC) 원산지” 인증비율표시(claim)가 된 재료를 운송받은 경우, 해당 재료의 인증비율표시(claim)를 “100% KFCC(또는 PEFC) 인증”으로 간주한다.

비고 2: PEFC가 허용하는 약어 및 인증비율표시(claim)의 번역 목록은 PEFC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3.28 KFCC(또는 PEFC) 관리된 원료(KFCC/PEFC controlled sources)

조직(organisation)이 자가검증시스템(DDS)을 통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원료로부터 온 재료를 “경미한 리스크”라고 결정한 산림 및 수목 기반의 재료를 포함하는 재료 범주

비고: “KFCC(또는 PEFC) 관리된 원료”는 본 재료 범주에 해당하는 재료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KFCC(또는 PEFC) 인증비율표시(claim)이기도 하다.

3.29 KFCC(또는 PEFC) 고객(KFCC/PEFC customer)

조직(organisation)으로부터 제품에 대한 KFCC(또는 PEFC) 인증비율표시(claim)를 제공받아 제품에 대한 법적 소유권 및/또는 물리적 소유를 취득한 조직(entity)

비고 1: 재료의 법적 소유권을 보유한 조직(entity) 이외의 다른 조직(entity)에게로 재료/제품이 물리적으로 운송되는 경우, 조직(organisation)은 본 정의에 의거하여 법적 소유권을 보유한 조직(entity)과 재료를 물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조직(entity) 중 하나를 KFCC(또는 PEFC) 고객으로 선정해야 한다.

비고 2: KFCC(또는 PEFC) 고객이란 용어는 후속 제품군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조직(organisation) 내 내부 고객을 지칭할 수도 있다.

3.30 KFCC(또는 PEFC) 제품군(KFCC/PEFC product group)

조직(organisation)이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CoC)을 적용하는 제품명/유형, 범주, 수종 유형, 연쇄관리방법(CoC), 재료 범주, KFCC(또는 PEFC) 인증비율표시(claim)에 의해 정의되는 동등한 투입재료를 가진 제품 또는 제품의 조합

비고 1: 조직(organisation)은 개별 제품, 제품 주문서 단위(job order) 및 생산 묶음(batch)을 KFCC(또는 PEFC) 제품군으로 정의할 수 있다.

비고 2: 조직(organisation)은 병렬/후속 제조 또는 거래 프로세스에 대해 하나 이상의 제품군을 수립할 수 있다.

비고 3: 이 표준의 부속서 2의 2.3a)항에 규정된 복수 사업장 조직(organisation)의 경우, KFCC(또는 PEFC) 제품군은 여러 사업장을 포함할 수 있다.

3.31 KFCC 인정 인증서 및 PEFC 공인 인증서(KFCC accredited certificate/PEFC recognised certificate)

- a) KFCC가 공시한 인증기관 또는 PEFC에 의해 상호인정을 받은 산림경영인증제도/표준에 따라 PEFC가 공시한 인증기관이 발행한 유효한 산림경영인증서

- b) KFCC가 공시한 인증기관 또는 이 표준 또는 PEFC에 의해 상호인정을 받은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CoC) 표준에 따라 PEFC가 공시한 인증기관이 발행한 유효한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CoC) 인증서

비고 1: PEFC의 상호인정을 받은 산림인증시스템과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CoC) 표준은 PEFC(www.pefc.org)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고 2: 인증서 부속서나 하위 인증서와 같이 별도의 문서를 통해 확인 가능한 단체 또는 복수 사업장 인증서의 경우(해당 인증서로 개별 사업장이나 단체 참여자에게 적용), 인증서와 별도 문서를 모두 해당 사업장/참여자에 관한 PEFC 공인 인증서로 간주한다.

3.32 KFCC(또는 PEFC) 홈페이지

KFCC(kfcc.kofpi.or.kr) 및 PEFC(www.pefc.org)

3.33 퍼센테이지 방법(Percentage method)

KFCC(또는 PEFC) 제품군에 포함된 투입재료를 기반으로 하여, 규정된 인증비율 표시 기간(claim period) 동안 KFCC(또는 PEFC) 제품군의 인증 함량을 계산하는 연쇄관리방법(CoC)

3.34 물리적 분리 방법(Physical separation method)

조직(organisation)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걸쳐 서로 다른 재료 범주의 명확한 식별 및/또는 분리를 기반으로 하여 규정된 KFCC(또는 PEFC) 제품군에 대한 인증비율표시(claim)를 관리하는 연쇄관리방법(CoC)

3.35 재활용 재료(Recycled material)

산림 및 수목 기반 재료로서,

- a) 제조 공정 중 폐기물로부터 회수되는 것. 재작업, 재가공 또는 스크랩과 같은 공정에서 생성되고, 이를 생성한 동일 공정 내에서 재생될 수 있는 재료는 제외된다. 제재 부산물(톱밥, 칩, 나무껍질 등) 또는 산림 잔여물(나무껍질, 나뭇가지의 칩, 뿌리 등)과 같은 1차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된다.
- b) 더 이상 의도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의 최종 사용자인 가정이나 상업, 산업 및 기관 시설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유통과정에서의 재료 반품도 포함한다.

비고 1: “동일한 공정에서 재생될 수 있는”이라는 용어는 하나의 공정에서 생긴 재료를 같은 장소의 동일한 공정으로 지속적으로 재투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패널 보드 생산의 프레스 라인에서 발생한 잔여물이 계속해서 같은 프레스 라인으로 들어가

게 되는 경우, 이러한 잔여물은 재활용 재료로 간주되지 않는다.

비고 2: 용어 정의는 ISO 14021의 용어 정의를 기반으로 한다.

비고 3: 재활용 재료에 관한 다른 예는 PEFC GD 2001에 제공된다.

3.36 회전 퍼센테이지(Rolling percentage)

인증비율표시 기간(claim period) 이전의 특정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KFCC(또는 PEFC) 제품군에 포함된 투입재료를 기반으로 하여, 규정된 인증비율표시 기간(claim period)에 대한 KFCC(또는 PEFC) 제품군의 인증 함량을 계산하는 연쇄관리방법(CoC)

3.37 구체화된 우려(Substantiated concern)

산림 및 수목 기반 재료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원료에서 왔음을 나타내는 증거로 뒷받침되는 정보

비고: 구체화된 우려란 조직(organisation) 자체의 우려뿐만 아니라 제3자의 우려일 수도 있다.

3.38 공급자(Supplier)

조직(organisation)의 KFCC(또는 PEFC) 제품군을 위해 투입되는 재료를 제공하는 조직(entity)

비고 1: 재료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자 이외의 조직(entity)이 KFCC(또는 PEFC) 인증 제품을 물리적으로 운송하는 경우, KFCC 인정 인증서 및 PEFC 공인 인증서가 적용되고, 조직(organisation)을 KFCC(또는 PEFC) 고객으로 지정한 조직(entity)을 해당 제품/운송에 대한 공급자로 간주한다.

비고 2: 공급자란 용어는 후속 제품군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조직(organisation) 내 내부 공급자를 지칭할 수도 있다.

3.39 인증마크 사용(Trademark use)

제품용(on product) 또는 비제품용(off-product) KFCC(또는 PEFC) 인증마크의 사용

3.40 산림 외 수목(Trees outside Forests, TOF)

국가에서 산림으로 지정한 임지 외의 지역에서 자라는 수목

4. 경영시스템 요구사항

4.1 일반 요구사항

4.1.1 조직(organisation)은 KFCC(또는 PEFC)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CoC) 프로세스의 정확한 실행 및 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 표준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경영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경영시스템은 수행되는 작업의 형태, 범위 및 양에 따라 적절해야 하며, 조직(organisation)의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CoC) 및 복수 사업장 조직의 경우 모든 사업장과 관련된 외주처리 활동을 포괄해야 한다.(부속서 2 참조)

4.1.2 조직(organisation)은 KFCC(또는 PEFC)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CoC)의 요구사항을 실행할 KFCC(또는 PEFC) 제품군을 규정함으로써,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CoC)의 범위를 정의해야 한다.

4.1.3 조직(organisation)은 KFCC(또는 PEFC)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CoC)에 포함되는 KFCC(또는 PEFC) 인증비율표시(claim)와 관련 선언을 최대한 정확하게 해야 한다.

4.2 문서화된 절차

4.2.1 조직(organisation)은 KFCC(또는 PEFC)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CoC)을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문서화된 절차에는 최소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a) KFCC(또는 PEFC)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CoC)과 관련된 책임 및 권한
- b) 제품군 정의를 포함한 생산/거래 프로세스 내 원재료 흐름의 설명
- c) 다음을 포함한 이 표준의 모든 요구사항에 해당하는 KFCC(또는 PEFC)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CoC) 프로세스에 관한 절차
 - i. 재료 범주의 식별
 - ii. KFCC(또는 PEFC) 인증 재료, 관리된 원료 및 기타 재료의 물리적 구분
 - iii. (퍼센테이지 또는 크레딧 방법을 적용하는 조직(organisation)) 제품군 정의, 인증 함량 계산, 크레딧 계정 관리, 산출로의 전환
 - iv. 제품의 판매/양도, KFCC(또는 PEFC) 인증비율이 표시된 문서를 포함한 KFCC(또는 PEFC) 인증비율표시(claim) 및 기타 제품용/비제품용 인증마크의 사용
 - v. 기록보관
 - vi. 내부 심사 및 부적합 통제
 - vii. 자가검증시스템

viii. 불만 사항 해결

ix. 외주처리

4.3 책임 및 권한

4.3.1 일반적 책임

4.3.1.1 조직(organisation)의 경영자는 이 표준의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CoC) 요구사항을 실행하고 유지하기 위한 책임을 정의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한다. 조직(organisation)의 방침은 직원, 공급자, 고객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이용 가능해야 한다.

4.3.1.2 조직(organisation)의 경영자는 다른 책임과는 관계없이 조직(organisation)의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CoC)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경영책임자를 지명해야 한다.

4.3.2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CoC)에 대한 책임 및 권한

조직(organisation)은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CoC) 실행 및 유지를 위하여 개인적 역량 활동에 대하여 식별하고 4.2.1 c) i-viii의 절차를 실행하기 위한 개인적 책임과 권한을 수립해야 한다.

비고: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CoC)의 책임과 권한의 담당자는 중복될 수 있다.

4.4 기록보관

4.4.1 이 표준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의 증거로, 조직(organisation)은 조직(organisation)의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CoC)에 포함되는 제품군에 대해 최소한 다음의 기록들을 수립 및 유지해야 한다.

a) 공급자의 KFCC(또는 PEFC) 인증 상태에 대한 증빙자료를 포함한, KFCC(또는 PEFC) 인증비율표시(claim)와 함께 투입재료를 공급하는 공급자 기록

비고: KFCC(또는 PEFC)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자료를 증거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b) KFCC(또는 PEFC) 인증비율표시(claim) 및 투입재료의 운송과 관련된 문서를 포함한 모든 투입재료에 대한 기록 및 재활용 투입재료인 경우, 재활용 재료의 정의에 부합함을 입증해주는 정보

c) 적용 가능한 경우, 인증 함량 계산, 산출 생산품으로의 퍼센테이지 전환 및 크레

및 계정의 관리에 관한 기록

- d) KFCC(또는 PEFC) 인증비율표시(claim) 및 산출 생산품의 운송과 관련된 문서를 비롯한 모든 판매/양도된 제품에 관한 기록
- e) 적용 가능한 경우, 리스크 평가 기록 및 중대한 리스크 공급자 관리를 포함한 자가검증시스템(DDS)에 대한 기록
- f) 내부 심사, 주기적인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CoC) 검토, 부적합 및 시정조치에 대한 기록
- g) 불만사항 및 해결에 관한 기록

4.4.2 조직(organisation)은 최소한 5년동안 기록을 보유해야 한다.

4.5 자원관리

4.5.1 인적자원

조직(organisation)은 조직(organisation)의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CoC)의 실행 및 유지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인원에 대해 적절한 훈련, 교육, 기술과 경험을 기반으로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4.5.2 기술설비

조직(organisation)은 이 표준의 요구사항에 해당하는 조직(organisation)의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CoC)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반구조와 기술 설비를 식별하고, 제공 및 유지해야 한다.

4.6 검사 및 통제

4.6.1 조직(organisation)은 외주처리를 통해 수행되는 활동을 포함하여 조직(organisation)에 적용되는 이 표준의 모든 요구사항의 준수 여부에 대해 최소한 1년에 한번(매년) 그리고 최초 인증심사 전에 내부 심사를 실시하고, 만약 필요한 경우 시정 및 예방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비고: 내부 심사 수행을 위한 지침은 ISO 19011에 제시되어 있다.

4.6.2 조직(organisation)의 경영자는 내부 심사 및 조직(organisation)의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CoC) 결과를 최소한 1년에 한번(매년) 검토해야 한다.

4.7 불만 사항

4.7.1 조직(organisation)은 4.7.2항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공급자, 고객 및 기타 관계자

가 조직(organisation)의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CoC)과 관련하여 제기한 불만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4.7.2 서면으로 접수된 불만 사항에 대하여 조직(organisation)은 다음을 실행해야 한다.

- a) 영업일 기준 10일 내로 불만 사항 제기자에게 불만 사항이 정식으로 접수되었음을 고지
- b) 불만 사항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 및 검증하고, 불만 사항을 결정
- c) 불만 사항에 대한 결정과 불만 사항 처리 프로세스에 대해 불만 사항 제기자와 공식적인 의사소통
- d) 필요 시, 적절한 시정조치 및 예방 조치가 취해졌는지를 보장

4.8 부적합 및 시정조치

4.8.1 내부 또는 외부 심사를 통해 이 표준의 요구사항에 대해 부적합이 발견된 경우, 조직(organisation)은 다음을 실행해야 한다.

- a) 부적합에 대응하고, 가능한 경우 아래의 조치 시행
 - i. 부적합을 통제하고 시정하기 위한 조치 시행
 - ii. 초래된 결과 처리
- b) 부적합이 재발하거나 다른 곳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을 제거하는 조치의 필요 여부를 다음과 같이 평가
 - i. 부적합에 대한 검토
 - ii. 부적합의 원인 파악
 - iii. 유사한 부적합이 존재하는지 또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
- c) 필요한 조치 실행
- d) 취해진 시정조치의 효과성 검토
- e) 필요한 경우, 경영시스템 변경

4.8.2 시정 조치는 발생한 부적합의 영향에 적절해야 한다.

4.8.3 조직(organisation)은 증거로써 다음과 같은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해야 한다.

- a) 부적합의 성격 및 취해진 후속 조치
- b) 시정조치 결과

4.9 외주처리

4.9.1 조직(organisation)은 조직(organisation)의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 (CoC)에 해당하는 활동을 다른 조직(entity)에게 외주처리할 수 있다.

4.9.2 조직(organisation)은 외주처리의 전 과정에 걸쳐, 외주처리한 모든 활동이 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을 포함한 이 표준의 요구사항에 부합함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조직(organisation)은 다음 사항을 보장하기 위해 외주처리 활동을하는 모든 업체 (entity)와 서면 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 a) 조직(organisation)의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CoC)에 해당하는 재료/제품은 다른 재료 또는 제품과 물리적으로 분리
- b) 조직(organisation)의 이 표준 요구사항의 적합성을 위해서 내부 또는 외부심사 동안 외주처리 조직(entity)의 사업장에 접근할 권한

비고 1: 외주 계약서 양식은 KFCC(또는 PEFC)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

비고 2: 외주 활동에 대한 내부 심사는 최소한 매년 그리고 외주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가급적 실시해야 한다.

4.10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CoC)에서의 사회, 건강 및 안전 요구 사항

이 조항은 작업에 있어서 원칙과 권리에 관한 1998년 국제노동기구의 선언(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1998)을 기초로 하는 건강, 안전 및 노동에 관련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4.10.1 조직(organisation)은 이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 건강 및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4.10.2 조직(organisation)은 다음을 입증해야 한다.

- a) 근로자가 자유롭게 그들의 대표자를 선택하고 고용주와 집단적으로 협상을 허용
- b) 강제노동의 금지
- c) 법정 최저 나이, 15세 미만, 또는 의무적인 취학 연령의 노동자는 취업 금지
- d) 근로자의 고용 평등과 대우

- e)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

5. 투입의 식별 및 산출의 선언

5.1 투입의 식별

5.1.1 KFCC(또는 PEFC) 제품군에 투입되는 재료의 개별 운송에 대하여, 조직(organisation)은 공급자로부터 다음의 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얻어야 한다.

- a) 공급자의 식별
- b) 제품의 식별
- c) 제품 수량
- d) 운송일자, 운송기간 또는 회계기간에 근거한 운송의 식별

KFCC(또는 PEFC) 인증비율표시(claim)가 있는 투입에 대한 문서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e) KFCC(또는 PEFC) 고객으로서 운송을 받는 조직(organisation)명
- f) 문서에 포함된 각 인증비율표시(claim)가 있는 제품에 대해 적용 가능한 KFCC(또는 PEFC) 인증비율표시(claim)
- g) 공급자의 KFCC 인정 인증서 및 PEFC 공인인증서 인증번호

비고 1: 인증서 번호는 숫자 또는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는 인증서의 고유 식별자가 된다.

비고 2: 운송문서의 예로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송장/거래명세서(invoice) 또는 운송증(delivery note)이 있다.

5.1.2 공급자 수준에서의 식별

5.1.2.1 KFCC(또는 PEFC) 인증비율표시(claim)와 함께 운송되는 모든 투입의 경우, 조직(organisation)은 공급자의 KFCC 인정 인증서 또는 PEFC 공인 인증서가 유효한지 KFCC(또는 PEFC) 홈페이지에서 검증해야 한다.

5.1.2.2 KFCC(또는 PEFC) 제품군에 투입되는 재료의 개별 운송에 대하여, 조직(organisation)은 공급된 재료의 재료 범주를 분류하여야 한다.

5.2 산출 선언

5.2.1 조직(organisation)이 KFCC(또는 PEFC) 고객에게 KFCC(또는 PEFC) 제품군의 산출에 대한 인증비율을 표시하려면, 조직(organisation)은 개별 운송에 대해 다음의 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 a) KFCC(또는 PEFC) 고객 식별 정보
- b) 재료 공급자 조직(organisation)명
- c) 제품 식별 정보
- d) 제품 수량
- e) 운송 일자/운송 기간/회계 기간
- f) 문서에 포함된 각 인증비율표시(claim) 제품에 대해 적용 가능한 KFCC(또는 PEFC) 인증비율표시(claim)
- g) 조직의(organisation) KFCC(또는 PEFC) 인증번호

비고: 인증서 번호는 숫자 또는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는 인증서의 고유 식별자가 된다.

5.2.2 조직(organisation)은 산출에 대한 인증비율표시(claim)가 포함된 문서의 유형을 명시해야 한다.

5.3 인증마크 사용

5.3.1 KFCC(또는 PEFC) 인증마크 및 라벨, 제품용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CoC) 인증비율표시(claim) 및 KFCC(또는 PEFC) 약어를 비롯한 인증마크의 사용은 한국산림인증(KFCC/PEFC) 인증마크 사용 표준(KFCC-S-04, PEFC ST 2001)을 준수해야 한다.

5.3.2 KFCC(또는 PEFC) 인증마크 사용 표준에 따른 인증마크 사용을 위해, 조직(organisation)은 KFCC(또는 PEFC) 위원회 또는 여타 PEFC 공인기관으로부터 유효한 상표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한다.

5.4 재활용 재료의 함량

5.4.1 재활용 재료가 포함되어 있는 조직(organisation)의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CoC)에 해당하는 제품의 경우, 조직(organisation)은 ISO 14021에 따라 재활용 재료의 함량을 계산하고, 요청 시, 이를 통지해야 한다.

6. 연쇄관리방법(CoC)

6.1 일반

- 6.1.1 연쇄관리방법(CoC)을 실행하기 위한 3개의 방법, 즉, 물리적 분리 방법(physical separation method), 퍼센테이지 방법(percentage method) 및 크레딧 방법(credit method)이 있다. 재료의 흐름과 프로세스의 특성에 따라 조직(organisation)은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 6.1.2 조직(organisation)은 특정 제품군에 대해 이 표준에서 선택한 연쇄관리방법(CoC)을 실행해야 한다.
- 6.1.3 제품군은 동일한 측정 단위 또는 단일 측정단위로 환산될 수 있는 단위를 사용하여, 동등한 투입재료를 가진 제품들로 설정해야 한다.
- 6.1.4 조직(organisation)은 제품군에 대한 투입으로 KFCC(또는 PEFC) 인증 재료 및 KFCC(또는 PEFC) 관리된 원료만 사용해야 한다.

6.2 물리적 분리 방법(Physical separation method)

- 6.2.1 물리적 분리 방법을 적용하는 조직(organisation)은 생산 또는 거래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서 재료 범주와 인증 함량이 서로 다른 재료가 분리되어 보관되거나 명확하게 식별되는지를 보장해야 한다.

비고: 물리적 분리는 예를 들어, 별도 보관, 표식(marking), 제품 특성별 또는 생산 시간별 구분을 통해 재료 범주와 인증 함량이 식별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 6.2.2 동일한 제품군에 서로 다른 인증 함량을 가진 재료를 투입한 경우, 조직(organisation)은 투입 중 가장 낮은 인증 함량을 산출에 대한 인증 함량으로 사용해야 한다.

보기: 물리적 분리 방법에 따라 동일한 KFCC(또는 PEFC) 제품군에 100%, 75%, 70%의 인증 함량을 투입으로 사용하는 조직(organisation)은 산출에 대해 “70% KFCC 인증”의 KFCC(또는 PEFC) 인증비율표시(claim)를 할 수 있다.

- 6.2.2.1 동일한 제품군에 KFCC(또는 PEFC) 인증 재료와 KFCC(또는 PEFC) 관리된 원료를 투입한 경우, 물리적 분리 방법에 따라 조직(organisation)은 해당 산출에 대한 인증비율표시(claim)를 KFCC(또는 PEFC) 관리된 원료로 주장해야 한다.

6.3 퍼센테이지 방법(Percentage method)

6.3.1 KFCC(또는 PEFC) 인증 재료 및 KFCC(또는 PEFC) 관리된 원료를 투입재료로 사용한 제품군의 인증 함량을 계산할 때, 퍼센테이지 방법을 실행해도 된다.

6.3.2 인증 함량 계산

6.3.2.1 조직(organisation)은 다음의 공식에 따라 각 제품군과 특정 인증비율표시 기간(claim period)에 대해 개별적으로 인증 함량을 계산해야 한다.

$$C_c [\%] = (V_c / (V_c + V_{cm})) \times 100$$

C_c : 인증 함량

V_c : KFCC(또는 PEFC) 인증 재료의 양

V_{cm} : KFCC(또는 PEFC) 관리된 원료의 양

비고: 중립 재료는 인증 함량 계산 시 고려하지 않는다.

6.3.2.2 조직(organisation)은 계산에 적용되는 모든 재료에 대해 하나의 측정 단위를 기반으로 인증 함량을 계산하여야 한다. 계산을 목적으로 하나의 측정 단위를 전환하는 경우, 조직(organisation)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전환율과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만약 적합한 전환율이 없는 경우에는, 조직(organisation)은 합리적이고 믿을 만한 전환율을 정의하고 사용해야 한다.

6.3.2.3 투입재료/제품에 KFCC(또는 PEFC) 인증 재료의 일부분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인증 함량에 상응하는 양만을 KFCC(또는 PEFC) 인증 재료로 계산식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머지 재료는 KFCC(또는 PEFC) 관리된 원료로 계산되어야 한다.

보기: “70% KFCC 인증”이라는 KFCC 인증비율표시(claim)와 함께 운송된 1톤 재료와 “100% KFCC 인증”이라는 KFCC 인증비율표시(claim)와 함께 운송된 1톤 재료를 투입하였다. 6.3.2.1항의 공식을 이용하면, 인증 함량은

$$C_c [\%] = ((700\text{kg} + 1000\text{kg}) / ((700 + 1000) + 300)) \times 100 = (1700 / 2000) \times 100 = 85\%$$

KFCC(또는 PEFC)인증 재료(2톤)이다.

6.3.3 KFCC(또는 PEFC) 제품군에 대해 계산된 인증 함량은 KFCC(또는 PEFC) 인증 비율표시(claim)인 “x% KFCC(또는 PEFC) 인증”과 같이 백분율로 나타내어야 한다.

보기: KFCC 제품군의 인증 함량이 특정 인증비율표시 기간(claim period) 동안 54%로 계산된 경우, 해당 제품군에 속하는 모든 제품은 해당 인증비율표시 기간(claim period)

동안 “54% KFCC 인증”이라는 KFCC 인증비율표시(claim)와 함께 KFCC 인증 제품으로 판매/양도될 수 있다.

비고: 이 표준은 x% KFCC 인증이라는 KFCC 인증비율표시(claim)가 있는 KFCC 인증 제품의 인증 함량을 제공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인증 함량의 최솟값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제품용 KFCC 인증마크 사용을 위한 최솟값은 인증마크 사용표준 (KFCC-S-04)에 규정되어 있다.

6.3.4 조직(organisation)은 회전 퍼센테이지로 퍼센테이지 방법을 적용해도 된다.

6.3.5 회전 퍼센테이지를 적용하는 조직(organisation)은 인증비율표시 기간(claim period) 이전의 투입기간 동안 구매한 재료를 기반으로 하여 KFCC(또는 PEFC) 제품군과 인증비율표시 기간(claim period)의 인증 함량을 계산해야 한다. 회전 퍼센테이지의 경우, 인증비율표시 기간(claim period)은 3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투입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보기: 3개월의 인증비율표시 기간(claim period)과 12개월의 투입기간을 선택한 조직(organisation)은 지난 12개월 동안 구매한 투입재료를 기준으로 앞으로 3개월 동안의 인증 함량을 계산한다.

6.4 크레딧 방법(Credit method)

6.4.1 크레딧 방법은 KFCC(또는 PEFC) 인증 재료의 투입에서 얻은 크레딧을 동일한 제품군 내의 KFCC(또는 PEFC) 관리된 원료로 양도하기 위해 실행해도 된다.

6.4.2 조직(organisation)은 KFCC(또는 PEFC) 인증 재료의 투입으로부터 얻은 크레딧에 대한 크레딧 계정을 생성 및 관리해야 한다. 크레딧은 단일 측정 단위로 계산되어야 한다. 투입요소의 측정단위를 산출 생산품 단위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환산계수를 정의해야 하는 것이 요구될 수 있다.

6.4.3 크레딧 계정에 적립된 크레딧 총량은 지난 24개월 동안 크레딧 계정에 입력된 크레딧의 총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해당 제품의 평균 생산기간이 24개월보다 길다는 것을 조직(organisation)이 입증할 수 있으면, 최대 기간을 24개월보다 더 연장해도 된다.

보기: 제품의 평균 생산기간(예를 들어, 숙성기간 포함)이 36개월인 경우, 조직(organisation)은 최대 누적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할 수 있다.

6.4.4 조직(organisation)은 하나의 인증비율표시(claim)를 위해 크레딧 계산법을 적용해야 한다. KFCC(또는 PEFC) 인증비율표시와 다른 인증시스템에 의한 인증비율표시(claim)가 있는 재료를 운송 받은 조직(organisation)은 두 인증비율표시(claim)를 모두 포함하는 결합된 크레딧을 사용하거나 인증비율표시(claim)들 중 하나만

사용하여 볼륨 크레딧을 계산해야 한다.

보기: 두 개의 인증시스템과 관련된 2개의 인증비율표시(claim)가 있는 재료를 운송받은 조직(organisation)은 여러 인증비율표시(claim)(예: KFCC(또는 PEFC) 인증/[다른 시스템의 인증비율표시(claim)])에 대해 하나의 크레딧 계정을 수립하거나 어떤 단일 인증비율표시(claim)(KFCC(또는 PEFC) 인증 또는 [다른 시스템의 인증비율표시(claim)])에 대하여 각각의 볼륨 크레딧 계정에 대입할 것인지 결정한다.

6.4.5 조직(organisation)은 다음 중 하나를 이용하여 크레딧을 계산해야 한다.

- a) 인증 함량 및 산출 생산품의 양(6.4.6항) 또는
- b) 투입재료 및 투입/산출 비율(6.4.7항)

6.4.6 크레딧 방법을 적용하는 조직(organisation)은 관련 인증비율표시 기간(claim period)의 인증 함량에 산출 생산품의 양을 곱하여 크레딧을 계산해야 한다.

보기: 특정 인증비율표시 기간(claim period) 동안 100톤의 산출 생산품으로 구성된 제품군의 인증 함량이 54%이면, 조직(organisation)은 산출 생산품의 54톤(100×0.54)에 달하는 볼륨 크레딧을 취득한 것과 같다.

6.4.7 투입재료와 산출 생산품 사이에 검증 가능한 비율을 입증할 수 있는 조직(organisation)은 투입/산출 비율에 KFCC(또는 PEFC) 인증 재료의 투입을 곱하여 크레딧을 직접 계산해도 된다.

보기: KFCC 인증 재료의 투입이 70 m^3 (“70% KFCC 인증” 원료 100 m^3)과 투입/산출 비율이 0.60 인 경우 (1m^3 의 원목을 제재하여 0.60 m^3 의 제재목을 얻은 경우), 조직(organisation)은 제재목 42 m^3 ($70 \text{ m}^3 \times 0.60$)의 볼륨 크레딧을 취득한 것이다.

6.4.8 조직(organisation)은 크레딧 계정의 크레딧을 크레딧 계정에 포함된 산출 생산품으로 분배해야 한다. 크레딧은 인증 제품이 인증 함량 100% 이거나 인증 함량이 100% 이하이고 조직(organisation) 자체의 임계점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방식으로 산출 생산품에 분배해야 한다. 산출 생산품의 양에 산출 생산품의 인증 함량을 곱한 결과는 크레딧 계정에서 차감되어 분배된 크레딧과 동일해야 한다.

보기: 조직(organisation)은 7유닛의 크레딧을 사용하여 100% KFCC 인증으로 7유닛을 팔거나 70% KFCC 인증으로 10유닛을 팔 수 있다.

7. 자가검증시스템(DDS) 요구사항

7.1 일반사항

7.1.1 재활용 재료를 제외한 KFCC(또는 PEFC) 제품군에 투입된 모든 재료에 대해, 조직(organisation)은 이 표준의 부속서 1에 명시된 바와 같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원료에서 온 재료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가검증시스템(DDS)에 따라 자가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이로써, 조직(organisation)은 제품군에 투입된 재료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원료에서 유래하고, KFCC(또는 PEFC) 관리된 원료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미한 리스크”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7.1.2 KFCC 인정 인증서 또는 PEFC 공인 인증서에 포함된 공급자가 KFCC(또는 PEFC) 인증비율표시(claim)와 함께 운송한 투입재료만 사용한 KFCC(또는 PEFC) 제품군에 대해, 조직(organisation)은 다음 요구사항을 충족시킴으로써, 자가검증시스템을 실시해도 된다.

- a) 하위 공급망에 있는 인증 및 비인증 조직(entity)도 자가검증시스템을 실행할 수 있도록, 조직(organisation)은 요청 시, KFCC(또는 PEFC) 인증비율표시(claim)와 함께 전달된 재료에 대해 부속서 1의 2.1항에 명시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요청 받은 정보를 조직(organisation)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요청을 조직(organisation)의 관련 공급자에게 전달해야 한다.(부속서 1의 2.2항)
- b) 투입재료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원료로부터 올 수 있다는 구체화 된 우려가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제기된 경우, 조직(organisation)은 다음 부속서 1의 4항에 따라 이러한 우려에 대해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 c) 조직(organisation)의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CoC)에 포함되지 않는 산림 및 수목 기반 재료/제품에 대해서도 조직(organisation)은 책임 및 절차를 규정, 문서화 및 실행함으로써, 산림 및 수목 기반 재료/제품이 불법적인 원료(논란의 여지가 있는 원료, 3.7a항)에서 왔다는 사실을 조직(organisation)이 알고 있거나 구체화된 우려가 있는 경우, 부속서 1의 4항에 의거하여 해당 우려가 해소할 때까지 이를 시장에 출하해서는 안 된다.

부속서 1 (규범) - 논란의 여지가 있는 원료로부터 은 재료(material)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KFCC 자가검증시스템(DDS)

규범적 부속서

1. 일반 요구사항

1.1 이 표준의 적용범위 하에서 조직(organisation)이 수행하는 활동이 무역 및 관세법을 포함한 모든 적용 가능한 목재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공급된 재료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원료에서 비롯되었을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직(organisation)은 이 표준의 다음의 요소에 따라 자가검증시스템(DDS)를 운영해야 한다.

1.2 KFCC 자가검증시스템은 재활용 재료를 제외한 조직(organisation)의 KFCC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CoC) 및 KFCC 제품군에 포함되는 모든 산림 및 수목 기반의 투입재료에 대해 실행해야 한다.

비고: 조직(organisation)은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에 대해 조직(organisation) 자체적으로 자가검증시스템을 실행할 수 있다.

1.3 조직(organisation)은 다음의 3단계로 KFCC 자가검증시스템을 실행해야 한다.

a) 정보수집

b) 리스크 평가

c) 중대한 리스크를 내재하고 있는 공급 관리

1.4 CITES 부속서 I에서 III까지의 목록에 있는 수종의 원재료를 구매하는 조직(organisation)은 CITES와 관련한 적용가능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2. 정보 접근성

2.1 조직(organisation)이 KFCC 자가검증시스템을 실행하기 위해, 조직(organisation)은 공급자로부터 제공되는 다음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a) 적용 가능한 경우, 재료/제품의 학명 및/또는 일반명(common name)을 포함하는 수종 또는 잠재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수종 목록의 식별

b) 재료가 별채되는 국가,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부속국가(sub-national region, 시·도 단위 이하) 지역 및/또는 별채의 양여 국가

비고 1: 일반명의 잘못된 사용이 수종을 잘못 식별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수종의 학명 사용이 요구된다.

비고 2: 거래명에 포함된 모든 수종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원료에서 오는 리스크와 동등하다면, 수종의 거래명을 사용했더라도 일반명을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간주된다.

비고 3: 만약 한 국가 내의 부속 국가 지역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원료와 관련된 동등한 리스크를 나타내는 경우, 재료 원산지의 부속국가 수준의 접근이 요구된다.

비고 4: “벌채의 양여”란 용어는 지정학적으로 규정된 산림지역 내 벌채를 위한 계약을 의미한다.

비고 5: “국가/지역”이란 용어는 국가, 부속국가 지역 또는 재료/제품 원산지의 벌채의 양여를 식별하기 위해 본 조항 전반에 걸쳐 사용된다.

2.2 하위 공급망에 있는 KFCC 인증 및 비인증 조직(entity)도 자가검증시스템을 실행할 수 있도록 조직(organisation)은 요청 시 KFCC(또는 PEFC) 인증비율표시(claim)와 함께 구매된 재료에 대해 이 부속서 1의 2.1항에 명시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요청받은 정보를 조직(organisation)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요청을 조직(organisation)의 관련 공급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3. 리스크 평가

3.1 조직(organisation)은 리스크 평가를 수행하여, 조직(organisation)의 KFCC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CoC)에 포함되는 모든 산림 및 수목 기반 투입에 대해 원재료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원료에서 왔을 리스크를 평가해야 한다. 단, KFCC 인정 인증서 또는 PEFC 공인 인증서가 있는 공급자가 KFCC(또는 PEFC) 인증비율표시(claim)와 함께 운송한 재료/제품은 예외로 한다. 이러한 재료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원료에서 왔을 “경미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3.2 조직(organisation)의 리스크 평가는 재료를 “경미한(negligible)” 또는 “중대한(significant)”과 같은 리스크로 범주로 분류해야 한다.

3.3 조직(organisation)의 리스크 평가는 표 1에서 3에 명시된 원산지 및 공급망 수준의 리스크 지표를 기준으로 한다.

3.4 조직(organisation)의 리스크 평가가 표 1에 명시된 지표를 식별하는 경우, 조직(organisation)은 해당 재료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원료에서 왔을 “경미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고 간주해도 되며, 표 2와 3의 지표는 고려할 필요 없이 리스크 평가를 종료할 수 있다.

3.5 조직(organisation)의 리스크 평가가 표1에 명시된 지표를 식별하지 않는 경우, 표

2와 3에 명시된 지표를 바탕으로 리스크 평가를 지속해야 하고, 해당 지표 중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조직(organisation)은 해당 재료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원료에서 왔을 “중대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고 간주해야 한다.

3.6 표 2와 3에 명시된 지표 중 어떤 것도 식별되지 않는 경우, 조직(organisation)은 공급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원료에서 왔을 “경미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고 간주하고, 리스크 평가를 종료해도 된다.

표 1: 경미한 리스크 지표 목록

지표
a) 논란의 여지가 있는 원료라는 용어에 포함되는 활동을 다루면서, (KFCC 및 PEFC 상호인정 이외의) 제3자 인증기관에서 발행된 산림경영,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CoC) 또는 섬유 재료 관련(fibre sourcing) 인증서에 의해 지원되는 산림인증제도에 대해 인증된 것으로 선언된 공급
b) 논란의 여지가 있는 원료에 의해 포함된 활동을 다루면서 산림인증제도 이외의 정부 또는 비정부 검증 또는 라이선스 매커니즘에 의해 검증된 공급
c)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확하게 식별된 검증 가능한 문서에 의해 확인된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최근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가 50보다 높거나, 최근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의 법치주의 지수(Rule of Law Index)가 0.5 보다 높은 목재 벌채 국가 및/또는 부속 국가 지역 ii. 수종의 일반명, 적용 가능하다면 학명뿐만 아니라 제품의 거래명과 유형 iii. 공급망 안에 포함되는 모든 공급자 iv. 공급 원산지의 산림지역 v. 제품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원료에서 오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계약상의 합의, 자가 선언을 포함하는 문서 또는 기타 신뢰할 만한 정보

표 2: 원산지 수준에서 중대한 리스크에 대한 지표 목록^{3),4)}

a) 산림경영에 대한 해당 지역, 국가 또는 국제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활

3) a)에서 i)열은 3.7항(논란의 여지가 있는 원료)의 요소들이다. 로마 숫자(i, ii, iii 등)로 번호가 매겨진 각 요소 아래의 행은 해당 요소에 대한 리스크 평가 지표를 제공한다. 요소 당 하나 이상의 지표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 모든 지표를 다 적용해야 한다.

4) 외부 참조 예시 및 보다 상세한 설명은 PEFC GD 2001산림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 (CoC) - 사 용지침(Chain of custody of forest-based products- Guidance for Use) 최신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p>동. 이는 산림경영 관행, 자연 및 환경보호, 보호 수종 및 멸종 위기 수종, 원주민, 현지 지역사회 또는 기타 영향 받는 이해관계자의 재산권, 거주권 및 토지 사용권; 보건, 노동 및 안전 이슈, 반부패 및 관련 로열티와 세금 지급 관련 활동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p>
<p>i. 최근 Transparency International(TI)의 부패인식지수(CPI)가 50보다 낮거나 세계사법정의 프로젝트(WJP)의 법치주의 지수(Rule of Law Index)가 0.5보다 낮은 경우⁵⁾</p>
<p>ii. 낮은 수준의 산림 관리 및 법률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진 국가/지역</p>
<p>iii. 재료/제품에 포함된 수종이 국가/지역 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원료 (a)나 (b)에 해당하는 활동이 만연한 수종으로 알려진 경우</p>
<p>iv. 국가가 이러한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수출/수입을 제한하는 UN, EU 또는 국가적 제재(sanction) 조치에 포함된 경우</p>
<p>b) 다양한 목재/비목재 임산물과 서비스를 지속 가능하게 생산할 수 있는 산림의 역량이 유지되지 않거나 별채 수준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속도를 뛰어 넘는 활동</p>
<p>i. 국제식량농업기구(FAO)의 산림자원평가와 같은 공개 데이터에 따라, 산업용 원목의 연간 별채량이 원산지 국가/지역 내 연간 축적 증가량을 초과한 경우</p>
<p>c) 풍경, 생태계, 수종 또는 유전적 수준에서의 생물다양성의 유지, 보존 또는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는 산림경영 활동</p>
<p>d)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산림지역을 식별, 보호, 보존 또는 휴경지(set aside)로 지정하지 않는 활동</p>
<p>i. 국가의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에 대한 환경성과지수(EPI)⁶⁾가 50보다 낮은 경우. 특정 국가의 EPI 지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원료 요소 c와 d를 다루는 법률(해당 법규의 신뢰할 수 있는 집행 증거와 결합하여)과 같은 다른 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TI CPI 지수 >50 또는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의 법치주의 지수(Rule of Law Index)(WJP) >0.5).</p>
<p>e) 다음과 같이 전용이 정당화되는 상황 이외에, 산림 전용이 일어나는 활동:</p>
<p>i. 토지이용 및 산림관리와 관련한 국가 및 지역의 정책과 법률을 따르는 경우</p>
<p>ii.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산림지역, 사회적·문화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기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p>
<p>iii. 탄소를 상당히 많이 저장하고 산림을 파괴하지 않는 경우</p>
<p>iv. 장기적인 보전과 경제적·사회적 혜택에 기여하는 경우</p>
<p>i. 국제식량농업기구(FAO)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공개 데이터 또는 정보에 따라, 최근 10년 동안의 가용 데이터를 통해 국가/지역 내 산림지의 순손실이 1%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p>

ii. 국제식량농업기구(FAO)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공개 데이터 또는 정보에 따라, 국가/지역 내 산림에서 인공림으로 전용되는 순면적이 해당 국가/지역의 산림지역 증가를 초과한 경우
f)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에서의 기본적 원칙과 권리에 관한 선언(1998)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
i.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에서의 기본적 원칙과 권리에 관한 선언(1998)이 해당 국가에서 지켜지고 있지 않음을 실증 연구가 입증한 경우
g) 유엔(UN) 원주민 관리 선언(2007)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
i. 유엔(UN) 원주민 관리 선언(2007)이 해당 국가에서 지켜지고 있지 않음을 실증 연구가 입증한 경우
h) 갈등을 야기하는 목재
i. 취약국가 리스트와 같은 공개 데이터에 있는 무력 충돌이 만연한 국가/지역
i) 유전자 변형 수목
i. 공개 데이터에 따라, 유전자 변형 산림 및 수목 기반 생물체가 생산되는 국가/지역 및 상업 시장

표 3: 공급망 수준에서의 중대한 리스크 지표 목록

지표
a) 제품이 거래된 국가/지역이 불분명한 경우
b) 제품 내 수종이 불분명한 경우
c) 논란의 여지가 있는 원료와 관련하여 공급망 내 조직으로부터 행해지는 불법적 행위의 증거가 있는 경우

3.7 리스크 평가는 부속서의 2.1항에 제시된 특성 및 위의 표 1에서 3에 따른 지표의 동일한 적용 가능성을 가진 모든 개별 공급업체 또는 여러 공급업체의 첫번째 운송에 대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비고: 동일 지역 내 공급자로부터의 운송이 부속서 2.1항에 제시된 특성과 동일하고, 표 1에서 3에 따른 지표의 적용 가능성이 동일한 경우, 리스크 평가는 해당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수행될 수 있다.

- 5) 이러한 지표들은 임업 분야에 항상 적합한 지수는 아닐 수 있다. 보다 적절한 지수가 있다면, KFCC(또는 PEFC) 위원회의 사전 동의에 따라 해당 지수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대체 지표는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CoC) 지침문서에 작성해 두어야 한다.
- 6) EPI는 세계경제포럼의 협력 하에 예일대학교와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공동으로 만든 것이다.
<https://epi.envirocenter.yale.edu/about-epi>

3.8 조직(organisation)의 리스크 평가 대상인 모든 재료에 대해, 조직(organisation)은 개별 공급자 및 동일한 특성을 공유하는 공급자들의 공급에 대하여 이 부속서 2.1항에 제시된 특성과 표 1에서 3에 따른 지표의 업데이트된 목록을 유지해야 한다.

3.9 리스크 평가는 검토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최소한 매년 그리고 부속서의 2.1항에 제시된 특성의 변경이 발생할 때 개정되어야 한다.

4. 구체화된 우려

4.1 조직(organisation)은 조직(organisation)의 자가검증시스템(DDS)에 포함되는 재료의 원산지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원료일 수 있다는 구체화된 우려를 확인한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시작하여 구체화된 우려가 즉시 조사됨을 보장해야 한다.

4.2 조직(organisation)의 조사를 통해 우려를 해소할 수 없는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원료에서 유래된 관련 재료의 리스크를 “중대한” 것으로 결정하고 부속서의 5항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5. 중대한 리스크 공급 관리

5.1 일반

5.1.1 “중대한 리스크”를 가진 것으로 식별된 공급의 경우, 가능하다면, 조직(organisation)은 공급자에게 이를 “경미한 리스크”를 가진 것으로 분류하기 위한 추가 정보 및 증거를 제공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조직(organisation)은 공급자에게 다음을 요청해야 한다.

a) “중대한 리스크” 공급과 관련된 원재료의 산림지역 및 전체 공급망을 식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

b) 조직(organisation)이 공급망 관리에 있어서 이전 단계의 공급자뿐만 아니라 2자 또는 3자의 공급자 운영에 대한 조사를 실시

비고: 이러한 절차는 예를 들면 계약서 또는 공급자의 문서화된 자기 선언서로 보장될 수 있다.

5.1.2 조직(organisation)은 “중대한 리스크”로 분류된 공급에 대한 2자 또는 3자 검증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검증 프로그램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 전체 공급망 및 공급 원산지인 산림지역의 식별

b) 적절한 경우, 사업장 조사

c) 요구되는 경우, 시정 조치

5.2 공급망의 식별

5.2.1 조직(organisation)은 “중대한 리스크” 공급의 모든 공급자로부터 전체 공급망과 공급 원산지의 산림지역에 대한 세부 정보를 요청해야 한다.

5.2.2 만약, 공급이 공급망의 첫 번째 단계에서 표 1의 지표에 따라 “경미한 리스크”로 판명될 경우, 조직(organisation)은 부속서 1의 4항에 명시된 대로 해결해야 하는 구체화된 우려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 공급망을 산림지역까지 추적할 필요는 없다.

5.2.3 제출된 정보를 통해 조직(organisation)은 사업장 조사를 계획 및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5.3 사업장 조사

5.3.1 조직(organisation)의 검증 프로그램은 “중대한 리스크”를 가지는 공급자의 사업장 조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사업장 조사는 조직(organisation)이 자체적(2차 평가) 또는 조직(organisation)을 대신한 3자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조직(organisation)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원료의 재료 원산지에 대한 충분히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문서검토를 통하여 사업장 조사를 대체할 수 있다.

5.3.2 조직(organisation)은 조사를 수행하는 인력이 “중대한 리스크”에 해당하는 공급의 원산지 및 식별된 리스크와 관련하여, 현지 비즈니스, 사회문화적 관습, 관련 조약, 협약, 법규, 거버넌스 및 법 집행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적격성/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5.3.3 조직(organisation)은 조직(organisation)의 검증 프로그램에 의해 검증되어질 하나의 공급자로부터 “중대한 리스크”에 해당하는 공급의 샘플을 결정해야 한다. 같은 공급자로부터의 동일한 운송은 단일 공급으로 간주해야 한다. 연간 샘플의 크기는 적어도 매년 “중대한 리스크”에 해당하는 공급 수의 제곱근으로 하며 ($y=\sqrt{x}$), 올림하여 정수로 사용한다. 이전 사업장 조사가 이 문서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데 효과적임을 증명한 경우, 샘플의 크기를 $y=0.8 \sqrt{x}$ 로 줄일 수 있고, 올림하여 정수로 사용한다.

5.3.4 사업장 조사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a) 원재료의 원산지에 대한 공급자 인증비율표시(claim)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공급망 내의 직접 공급자 및 이전 단계의 공급자
- b)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공급 원산지인 산림지역의 산림소유자/경영자 또는 산림지역 경영활동에 책임이 있는 기타 당사자

5.4 시정 조치

5.4.1 조직(organisation)은 조직(organisation)의 검증 프로그램을 통하여 식별된 공급자의 부적합에 대한 시정조치를 실행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

5.4.2 시정조치의 범위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원료로부터 올 수 있는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리스크 크기와 심각성을 기반으로 하여야 하고, 적어도 다음 사항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 a) 논란의 여지가 있는 원료의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이 조직(organisation)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특정 기간 내에 식별된 리스크를 다루기 위한 요구와 함께 식별된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의사소통
- b) 산림지역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 준수 또는 공급망 안에서 정보 흐름의 효율성과 관련된 리스크 완화 조치를 규정하도록 공급자에게 요구
- c) 공급자가 적절한 리스크 완화 조치를 실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을 때까지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계약과 주문의 취소 또는 정지

6. 시장출하금지

6.1 원료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원료로부터 온 산림 및 수목 기반 재료 제품을 KFCC 제품군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6.2 조직(organisation)의 KFCC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CoC)에 해당하지 않는 산림 및 수목 기반 재료/제품이 불법 원료(논란의 여지가 있는 원료, 3.7a항)라는 것을 조직(organisation)이 알게 된 경우, 이를 시장에 출하해서는 안 된다.

6.3 조직(organisation)의 KFCC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CoC)에 해당하지 않는 산림 및 수목 기반의 재료/제품이 불법 원료(논란의 여지가 있는 원료, 3.7a항)에서 온 것을 보여주는 구체화된 우려를 조직(organisation)이 접수한 경우, 부속서의 4항에 따라 해당 우려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를 시장에 출하해서는 안 된다.

부속서 2 (규범) - 복수 사업장 조직(organisation)의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CoC) 표준 실행

규범적 부속서

1. 개요

이 부속서의 목적은 여러 사업장을 가진 조직(organisation)에게 KFCC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CoC) 요구사항의 실행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여, 평가가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CoC)의 적합성에 대해 적절한 신뢰를 제공하는 것을 보장하고,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CoC) 인증이 경제적 및 운영적 측면에서 실용적이고 실현 가능함을 보장하는 것이다. 복수 사업장 조직(organisation)의 인증은 일반적으로 소규모 독립적인 기업 집단의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CoC) 실행과 인증을 허용한다.

이 부속서는 복수의 생산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조직(organisation)에게 적용되는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CoC) 요구사항의 실행을 위한 요구사항만을 수록하고 있다.

2. 복수 사업장 조직(organisation)에 대한 적격 기준

2.1 복수 사업장 조직(organisation)은 특정 활동에 대해 계획,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는 확인된 중앙 기능을 가지는 조직(organisation). (일반적으로, 이후부터는 “중앙 관리 사무소(본사)”라고 한다.) 그리고 그러한 활동들에 대해서 전반적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하는 지역 사무실 또는 지사(사업장)의 네트워크로 정의된다.

2.2 복수 사업장 조직(organisation)은 특별한 조직(entity)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은 중앙 관리 사무소(본사)와 법적 또는 계약된 연결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심사의 대상이 되는 일반적인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CoC)에 대해서 중앙 관리 사무소(본사)에 의한 지배를 받아야 한다. 이는 중앙 관리 사무소(본사)는 어떠한 사업장이라도 필요한 경우 시정의 실행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2.3 복수 사업장 조직(organisation)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a) 일반적인 소유권, 경영 또는 다른 조직적인 연결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는 프랜차이즈나 회사를 운영하는 조직(organisation)
- b)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CoC) 인증의 목적을 위해 설립되고 기능하는 독립적인 법적 기업 그룹(생산자 그룹)

비고: 협회 소속 구성원은 “경영 또는 다른 조직적인 연결”이라는 용어에 해당되지 않는다.

2.4 생산자 그룹은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CoC) 인증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해 함께 협력하는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소기업들의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중앙 관리 사무소(본사)는 적절한 동업 단체 또는 해당 목적을 위해 구성원들의 추천을 받았거나 이 표준의 목적에 맞게 일관되게 관리되는 그룹 서비스를 제공하며 적절한 경험을 보유한 법적 조직(entity)일 수 있다. 또한, 중앙 관리 사무소(본사)는 그룹 중 한 구성원에 의해 관리될 수 있다.

비고: 생산자 그룹 내 중앙 관리 사무소(본사)는 “그룹 조직(entity)”, 사업장은 “그룹 구성원”이라 부를 수 있다.

2.5 사업장은 조직(organisation)의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CoC)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이다.

2.6 생산자 그룹은 단일 국가에 소재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참여로 제한된다.

- a) 50인 이하의 직원(정규직 해당)을 가지는 경우
- b) 매출액이 약 130억(10,000,000 EUR) 미만인 경우

3. 복수 사업장 조직(organisation)에 대한 요구사항

3.1 일반

3.1.1 조직(organisation)의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CoC)은 중앙 관리되고 중앙 관리 사무소(본사)의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한다. 모든 관련 사업장(중앙 관리 기능 포함)은 조직(organisation)의 내부 심사 프로그램 대상이 되고, 인증기관이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내부 심사 프로그램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3.1.2 조직(organisation)의 중앙 관리 사무소(본사)는 이 표준에 따라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CoC)을 수립하였고 전체 조직(organisation)(모든 사업장 포함)이 이 표준의 요구사항에 부합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3.1.3 조직(organisation)은 중앙 관리 사무소(본사)를 포함한 모든 사업장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는 능력과 사업장 내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CoC) 운영에 변경이 요구될 시, 이를 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3.2 중앙 관리 사무소(본사)의 책임 및 기능

3.2.1 중앙 관리 사무소(본사)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a) 인증기관과의 관계 및 의사소통을 포함하여 인증 프로세스 내에서 복수 사업장 조직(organisation)을 대표
- b) 참여하는 사업장의 목록을 포함하여 인증과 인증 범위를 위한 신청서 제출
- c) 인증기관과의 계약적 관계를 보장
- d) 참여하는 사업장을 포함하여, 인증 범위의 확대 또는 축소를 위해 인증기관에 요청서 제출
- e) 전체 조직(organisation)을 대표해서 이 표준의 요구사항에 부합되도록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CoC)을 수립하고 유지하는 것에 대한 의지를 표명
- f) 이 표준에 부합되도록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CoC)의 효과적인 실행 및 유지를 위해 모든 사업장의 정보와 안내를 제공; 중앙 관리 사무소(본사)는 사업장에 다음의 정보 또는 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해야 한다.

- 이 표준의 사본과 이 표준 요구사항 실행과 관련된 지침
- 인증마크 사용 표준 및 이의 실행과 관련된 지침
- 복수사업장 조직(organisation)의 경영을 위한 중앙 관리 사무소(본사)의 절차
- 평가와 사후관리의 목적으로 사업장의 문서와 설비에 접근할 수 있는 인증기관 또는 인정기관의 권리와 제3자에게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관한 인증기관과의 계약 조건
- 복수 사업장 인증 내에서 사업장 간의 상호 책임의 원칙에 대한 설명
- 내부 심사 프로그램, 인증기관의 심사 및 사후관리와 개별 사업장에 적용되는 관련 시정 및 예방 조치의 결과
- 복수 사업장 인증서 및 인증 범위와 사업장이 포함된 인증 관련된 기타 사항

비고: “상호 책임”이란 용어는 하나의 사업장 또는 중앙 관리 사무소(본사)에서 발견된 부적합으로 인해 모든 사업장에서의 시정조치, 내부 심사의 횟수 증가 또는 복수 사업장 인증서의 취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g) 이 표준에 따라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CoC)을 실행하고 유지한다는 사업장의 의지를 포함해야 하며, 모든 사업장에게 조직적 또는 계약상의 연관성을 제공. 중앙 관리 사무소(본사)는 이 표준에 대한 부적합 발생 시, 인증 범

위 내의 어떠한 사업장을 배제하지 않고 시정 또는 예방 조치 실행 및 강제성의 권리를 포함한다는 계약서나 기타 서면 동의서를 모든 사업장과 체결해야 한다.

- h) 복수 사업장의 관리를 위한 문서화 된 절차를 수립
- i) 이 표준의 요구사항에 따라 중앙 관리 사무소(본사) 및 사업장과 관련한 기록 보유
- j) 3.2.2항에 명시된 내부 심사 프로그램을 운영
- k) 내부 심사 프로그램 및 인증기관의 평가 및 사후관리의 결과 검토를 포함하여 중앙 관리 사무소(본사) 및 사업장의 적합성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 시, 시정 및 예방 조치를 수립하고, 취해진 시정조치의 효과를 평가

3.2.2 내부 심사 프로그램

3.2.2.1 내부 심사 프로그램은 다음을 제공해야 한다.

- a) 인증기관의 평가에 앞서, 모든 사업장(중앙 관리 사무소(본사)의 관리부서를 포함)에 대한 사업장(현장) 또는 원격 심사(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 (CoC) 프로세스의 실행을 원격으로 검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 b) 인증기관이 인증 범위 확대 심사 프로세스를 시작하기에 앞서 신규 사업장에 대한 심사

3.3 사업장의 기능 및 책임

복수 사업장 조직(organisation)과 관련된 사업장은 다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

- a) 이 표준에 따른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CoC) 요구사항의 실행 및 유지
- b)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CoC) 요구사항과 기타 적용가능한 인증 요구사항 준수에 대한 의지를 포함하여, 중앙 관리 사무소(본사)와의 계약적 관계를 체결
- c) 공식 심사나 검토 등의 관련 데이터, 문서 또는 기타 정보에 대한 중앙 관리 사무소(본사)나 인증기관의 모든 요청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
- d) 모든 사업장의 설비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중앙 관리 사무소(본사)가 수행하는 내부 심사 및 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심사의 만족스러운 완료를 위해 전폭적인 협력과 지원을 제공
- e) 중앙 관리 사무소(본사)가 수립한 관련 시정 및 예방 조치의 실행

표 4: 복수 사업장 조직(organisation)에서 실행되는 이 표준 요구사항에 대한 책임 범위

표준 요구사항	중앙 관리 사무소(본사)	사업장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 (CoC) 프로세스에 대한 요구사항 - 물리적 분리방법		해당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 (CoC) 프로세스에 대한 요구사항 - 피센테이지 방법		해당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CoC) 프로세스에 대한 요구사항 - 크레딧 방법		해당
경영시스템 요구사항		
책임 및 권한	해당	해당
일반적 책임	해당	해당
산림 및 수목 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 (CoC)에 대한 책임 및 권한	해당(d 와 e의 경우)	해당
문서화된 절차	해당 (a, e 및 f의 경우)	해당
기록보관	해당 (f 와 g의 경우)	해당
자원관리	해당 (제공된 활동의 경우에만)	해당
인적자원/인원	해당	해당
기술설비	해당	해당
검사 및 제어	해당	해당
불만 사항	해당	해당